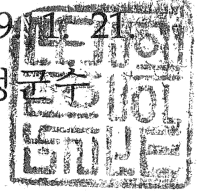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11. 21

제 출 자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민선 7기 공약사항의 이행 및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기구 개편사항

1) 주민복지국의 분장 업무 명칭을 일부 변경함.

(여성청소년, 보육지원, 복지자원·희망복지 등→ 여성가족, 보육시설, 복지나눔·복지연계 등)

2) 건설도시국 내 도시정비과 신설 및 도시과 업무 기능 조정.

(도시행정·도시계획·하수시설·농업시설·전기→도시행정·도시계획·도시재생·도시디자인)

3) 정책관광국 내 교육청소년과 신설.

나. 관련 조례 개정사항

- 1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제3조 중 위원회의 구성: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→주민복지국장,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 담당 부서장→기획예산 담당 부서장
- 2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」
 - 별표 1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내판: 치수방재과→안전방재과
- 3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
 - 제6조 중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간사: 군 정책사업과장→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
 - 제7조 중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: 군 정책관광국장→교육 업무 담당 국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예산 필요 없음.

다. 기타사항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- 2) 성별/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.
- 4) 입법예고: 2019. 1. 8. ~2019. 1. 17.
- 5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.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기획·군정홍보·예산·지역인구정책·서울사무소”를 “기획·군정홍보·예산·지역인구정책·혁신평가·서울사무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무·규제개혁·감사·조사평가”를 “법무·규제개혁·감사·조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공무원단체지원”을 “직원복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경리·계약·재산관리”를 “경리·계약·재산관리·청사관리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여성청소년·보육지원”을 “여성가족·보육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생활보장·통합조사·통합관리·주거복지”를 “기초생활보장·복지조사·복지관리·주거의료복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복지자원·희망복지”를 “복지나눔·복지연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도시과·안전방재과”를 “안전방재과·도시과·도시정비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도시행정·도시계획·하수시설·농업시설·전기”를 “안전기획·사회재난·자연재난·하천시설·하천관리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안전기획·사회재난·자연재난·하천시설·하천관리”를 “도시행정·도시계획·도시재생·도시디자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건축행정·주택·공동주택관리·공공시설·디자인·도시재생”을 “가로정비·하수시설·농업시설·전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건축행정·주택·공동주택관리·공공시설

제9조제1항 중 “정책사업과·문화체육과·관광과”를 “정책사업과·문화체육과·관광과·교육청소년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공공사업·민자사업·교육정책”을 “공공사업·공공개발·민자개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교육정책·평생교육·청소년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도시국장”을 “주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기획감사 담당 부서장”을 “기획예산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침수 위험 지구 등의 표지판에 “치수방재과”를 “안전방재과”로 한다.

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군 정책사업과장”을 “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하고, 제7조제2항 중 “군 정책관광국장”을 “교육 업무 담당 국장”으로 하며,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교육 업무 담당 국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·보조기관 설치) ①(생략) ② 기획예산실장은 <u>기획·군정홍보·예산·지역인구정책·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</u>을 분장한다. ③ 법무감사실장은 <u>법무·규제개혁·감사·조사평가</u>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	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·보조기관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기획·군정홍보·예산·지역인구정책·혁신평가·서울사무소</u>----- ③ -----<u>법무·규제개혁·감사·조사</u>-----
제5조(자치행정국) ①(생략) ② 자치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<u>총무·인사교육·자치행정·공무원단체지원·민방위에 관한 사항</u> 2. ~ 3.(생략) 4. <u>경리·계약·재산관리</u>에 관한 사항 5. ~ 7.(생략)	제5조(자치행정국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-----<u>직원복지</u>----- 2. ~ 3.(현행과 같음) 4. <u>경리·계약·재산관리·청사관리</u>----- 5. ~ 7.(현행과 같음)
제7조(주민복지국) ①(생략)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<u>복지기획·노인복지·여성청소년·보육지원</u>에 관한 사항 2. <u>생활보장·통합조사·통합관리·주거복지</u>에 관한 사항 3. <u>복지자원·희망복지·장애인복지·드림스타트</u>에 관한 사항 4. ~ 7.(생략)	제7조(주민복지국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<u>복지기획·노인복지·여성가족·보육시설</u>----- 2. <u>기초생활보장·복지조사·복지관리·주거의료복지</u>----- 3. <u>복지나눔·복지연계·장애인복지·드림스타트</u>----- 4. ~ 7.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8조(건설도시국) ① <u>건설도시국에 건설과 · 도시과 · 안전방재과 · 건축과 · 토지정보과를 둔다.</u>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(생략) 2.<u>도시행정 · 도시계획 · 하수시설 · 농업시설 · 전기에 관한 사항</u> 3.<u>안전기획 · 사회재난 · 자연재난 · 하천시설 ·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</u> 4.<u>건축행정 · 주택 · 공동주택관리 · 공공시설 · 디자인 ·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</u> 5.~ 6.(생략) <신설> 7.<u>토지관리·지적·지적재조사·지가정보·도로명 주소에 관한사항</u>	제8조(건설도시국) ① ----- <u>건설과 · 안전방재과 · 도시과 · 도시정비과 · 건축과 · 토지정보과</u>----- ② ----- 1.(현행과 같음) 2.<u>안전기획 · 사회재난 · 자연재난 · 하천시설 · 하천관리</u>----- 3.<u>도시행정 · 도시계획 · 도시재생 · 도시디자인</u>----- 4.<u>가로정비 · 하수시설 · 농업시설 · 전기</u>----- 5.~ 6.(현행과 같음) 7.<u>건축행정 · 주택 · 공동주택관리 ·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</u> 8. -----
제9조(정책관광국) ① <u>정책관광국에 정책사업과 · 문화체육과 · 관광과로 둔다.</u> ② 정책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<u>정책사업 · 공공사업 · 민자사업 ·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</u> 2.~ 4.(생략) <신설>	제9조(정책관광국) ① -----<u>정책사업과 · 문화체육과 · 관광과 · 교육청소년과</u>----- ② ----- 1.<u>정책사업 · 공공사업 · 공공개발 · 민자개발</u>----- 2.~ 4.(현행과 같음) 5.<u>교육정책 · 평생교육 · 청소년에 관한 사항</u>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